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안)

1. 제정이유

영상정보 처리 기술의 고도화 및 사회적 유용성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단계별 기준 등을 규정하고 피해 구제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범위(안 제2조)

- 1)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 및 비영리단체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2) 영상정보 처리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고정형 및 이동형(착용형, 휴대형, 부착형 등) 등 다양한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규율함
- 3)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는 일반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6조~제10조)

-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그 기능에 따라 영상촬영기기와 기타 영상처리
기기로 구분하고, 이 중 영상촬영기기를 구체적인 설치·운영 형태
에 따라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구분함
 - 2) 최근 몰래카메라 관련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거나 부착·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3)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는 현행과 같이 촬영 목적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고,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는 불빛, 소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함
- * 무인비행장치(드론)와 같이 불빛, 소리 등으로도 촬영 사실 인식이 곤란한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촬영시간 및 장소 등을 사전 게재토록 함
-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의 무분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예방하고,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부착·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
함으로서 국민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안 제11조~제14조)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2)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이용 목적 및 이용 방법의 제한, 폐기 기한의 설정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보호기준을 강화함
- 3)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여 개인영상정보의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오·남용 우려를 예방함

라.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안 제15조~제19조)

- 1)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의무화
-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이 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신고토록 함
- 3)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 시설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신규 구축시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종사자 자

격 및 교육 등 의무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마. 영상정보주체 등의 권리 보장(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1) 영상정보주체 등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출처 확인, 사본의 교부, 보관, 촬영 및 이용·제공의 중단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 방법 등을 규정함.
- 2)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열람·출처 확인·보관·삭제요구 등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 3) 영상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과 절차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상정보주체가 훨씬 용이하게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

바. 적용의 일부 예외(안 제24조)

-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언론·종교의 자유 등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균형을 위해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전과 안녕, 언론·종교단체·정당의 고유목적 달성 등을 위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함

사. 개인영상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안 제28조)

-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안전부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권리 구제의 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2) 개인영상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영상정보주체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고충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아. 시정 명령 및 개선 권고(안 제30조~제31조)

- 1)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영상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침해 행위의 중지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2)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영상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3) 영상정보처리기가 일상 생활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정 명령 또는 개선 권고 등을 통하여 이 법 규정이 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 될 것으로 기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기준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살아있는 개인 또는 해당 개인과 관련된 사물을 촬영한 정보로서 초상이나 형태, 행동 등을 통하여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영상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영상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기기를 말한다.

가. 영상촬영기기 :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기기로서 다

음 각 단의 기기를 말한다.

1) 고정형 영상촬영기기 : 일정한 공간을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2)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 위 고정형 영상촬영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상촬영기기로서 사람의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하여 촬영하는 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나. 기타 영상처리기기 : 전자회로 또는 유무선 네트워크로 영상촬영기기에 연결되어 촬영된 영상을 화면상에 표시하거나 녹화, 전송 또는 분석하는 기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 ‘개인정보’는 ‘개인영상정보’로,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주체’로 본다.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영상정보주체의 행동에 간섭하거나 관찰할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래의 개인영상정보 형태를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기준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4조·제24조의2에 따른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하여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제1절 고정형 영상촬영기기

제6조(고정형 영상촬영기기 설치·촬영) ①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를 부착하거나 거치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여 촬영 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고정형 영상촬영기기의 설치가 허용된 장소
2. 다중이용시설, 공공장소, 대중교통 수단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
3. 집합건물의 복도 또는 계단, 주택단지의 부속대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로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나 방문객이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

③ 제2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할 수 있으며 당초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고정형 영상촬영기기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통계작성, 학술연구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제6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촬영 목적 및 범위, 기간 등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등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제6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영상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
3. 새로운 기술의 발전 또는 결합 가능한 정보의 증가 등으로 영상정보주체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촬영기를 설치할 예정이거나 당초 설치 목적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또는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고정형 영상촬영기기의 임의 조작 등 제한)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3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당초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한시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3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통해 녹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직책 또는 성명,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설치 방법과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제9조(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촬영)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다.

1.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영상정보주체와 체결된 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 체결 전 영상정보주체의 요구를 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영상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회의, 공연, 행사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낮은 장소에서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제10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촬영 사실을 표시하였거나 영상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상황에 비추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상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를 촬영·이용하는 자(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
2.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관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0조(촬영 사실 표시)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촬영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를 제조, 유통, 판매하는 자는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불빛, 소리 등으로 개인영상정보 촬영 사실이 표시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11조(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당초 촬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영상정보주체에게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영상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영상정보를 가공한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공기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의 의무)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및 이용 방법의 제한, 폐기 기한의 설정,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하는 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영상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영상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영상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영상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영상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

독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4장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15조(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보호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를 보호책임자로 간주한다.

②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또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 체계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③ 보호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 처리 현황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련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촬영기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촬영기기(공공기관이 조사·단속 및 재해·재난 대응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목적, 운영 대수 및 설치 위치
2.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4. 영상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절차 및 방법
5.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6.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점검) 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기관명, 소재지,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설치 목적 및 근거, 설치 대수 등)
2.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 대책

3.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 현황

4. 영상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5.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공공기관 외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서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규모 이상 운영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이 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 시설의 운영·관리) ① 지방자치단체가 제6조제3항에 따른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등을 분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통합관제 시설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거나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20조(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된 영상정보주체 또는 해당 개인영상정보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영상정보주체등”이라 한다)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출처 확인, 사본의 교부, 보관, 촬영 및 이용·제공의 중단 또는 삭제(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등을 요구한 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등 조치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영상정보주체등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등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등 조치를 하여야 한

다.

1. 법률에 따라 열람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영상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영상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성립된 권리·의무 관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열람등을 요구한 자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경제적 여건 등의 사유로 현저히 곤란하거나 열람등을 요구한 목적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에 한하여 기술적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열람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권리행사의 방법과 절차) ① 영상정보주체등 또는 해당 영상정보주체등을 대리하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열람등 요구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열람등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영상정보주체등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의해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된 직후 해당 영상정보주체가 열람 또는 삭제를 직접 요구하는 등 문서에 의한 요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주체의 요구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④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주체등이 열람등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 제기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이를 영상정보주체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⑤ 영상정보주체등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등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영상정보주체등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권리행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 관리)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출처 확인 등을 위하여 촬영, 이용, 제공, 공개, 열람, 삭제, 폐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력 관리의 기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손해배상책임)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주체’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 ‘개인정보’는 ‘개인영상정보’로 본다.

제6장 보 칙

제24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는 제2장부터 제5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촬영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영상정보
2. 재난·재해 등의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3.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촬영·이용하는 개인영상정보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개인영상정보
5. 방송, 영화, 광고물, 홍보물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처리자와 영상정보주체간 계약을 통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
6. 취미, 친교 등 순수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
 -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자신의 영업장이나 사무소에 제6조제3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7조,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영상정보 제공을 매개(媒介)하는 경우에는 제3장 및 제4장, 같은 법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산하 공공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시·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과 통합관제업무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금지행위)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영상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4.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영상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하는 행위

제28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권리 구제의 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요청의 접수·처리, 사실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영상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전산 시설 또는 전산자료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련 자료와 제2항에 따라 검사한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시정조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를 위반하는 경우

2.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위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 개인영상정보 침해 행위의 중지

2.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

고를 받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32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벌 칙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은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

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은 자

3.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은 자

4. 제27조제3호를 위반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당초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임의로 조작한 자 또는 녹음을 한 자

2. 제27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거나 처리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3. 제27조제4호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된 개인영상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한 자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도록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몰수·추징 등) 제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거나 부착·거치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한 자
3.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주체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열람등 요구를 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5.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이력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5조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 중인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영상정보 및 설치 또는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는 이 법에 따라 처리 및 설치 또는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8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관제센터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25조, 제58조제2항, 제72조제1호, 제75조제1항제3호 및 동 조 제2항제7호, 제75조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7항 중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

제73조제1호 및 제75조제2항제6호 중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를 각각 “제24조제3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개인정보보호협력과	
연 락 처	02-2100-4141